과 학 편 집 위 원 회

이해충돌의 정의와 예방

발 표 자 이 효 빈

2022.11.25.

01

“ 이해충돌의 정의 ”

- 이해충돌방지법 : 2022년 5월 19일 시행 (2021년 5월 18일 제정)
- 공직자 : 대학, 공공기관 등에 적용
- 학회 :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나 서약서 등 마련 필요

01

“ 이해충돌의 정의 ”

- **필요성** : 연구와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학술단체(학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
- **정의** : 이해충돌이란 제3자가 보기에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함

01

“ 재정적 이해충돌 ”

➢ **정의** :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01

“ 재정적 이해충돌 ”

➢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모든 직간접적 경우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

①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급여, 연구비, 자문료, 강연료, 회의비,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

② 기업 또는 단체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현금, 주식, 스톡옵션, 소유권 등을 받는 경우

01

“ 재정적 이해충돌 ”

-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모든 직간접적 경우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①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여행경비, 항공권, 숙박비, 식비, 교육훈련비, 상품권, 접대, 선물 등을 받는 경우

②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연구인력, 장비, 시설, 재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③ 연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이사 또는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02

“ 사적 이해충돌 ”

✓ **정의:**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갈등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의 기회, 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02

“ 사적 이해충돌 ”

➢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 직간접적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

✓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

①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연구과제, 연구비 평가, 수주, 고용 등을 평가를 수행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03

“ 직무상 이해충돌 ”

➢ 정의 :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

✓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① 연구자가 외부연구나 외부강연을 중시하여 원 소속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소홀한 경우

②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③ 연구자가 원 소속기관의 다른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 등을 외부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④ 원 소속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자원을 개인적인 목적 또는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04

“ 학회의 이해충돌 ”

- **(이해충돌방지법)**
- 학회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 및 서약서 등 마련 필요

– 재정적 이해충돌 : 논문과 관련되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해 밝힘

– 인적 이해충돌 : 편집자/심사자/저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 편집자가 자신이 편집자로 있는 논문에 출판하는 경우/ 심사자와 저자 간에 이해충돌 발생 / 특수관계인(미성년 공저)이 있는 저자로 있는 경우

– 직무상 이해충돌 : 논문과 관련되어 저자의 소속기관이 다양한 경우

• 저자가 다양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밝힘

– 지적 이해충돌 : 연구자의 이념, 신념, 지적 성향이 달라 편향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

04

편집인의 이해충돌

- 편집인이 자신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

➢ 편집인이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심사자를 스스로 지정하고 논문을 심사 받아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발생 하였음

➢ 명백한 ' 사적 이해충돌 ' 에 해당함

➢ 편집인이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
: 심사자 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처리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함

04

“저자의 이해충돌”

- **(저자의 소속 표기)** 저자의 연구실적 표기, 연구부정행위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
  →소속기관은 ①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②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③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인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논문 등에 관련 사실을 밝힘

- **(재정적 이해충돌)** 재정적 이해충돌에 대해 학술지에 분명하게 밝힘
-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거짓으로 밝히는 경우

- **(지적이해충돌)** 논문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심사자를 지목하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과 동일한 사람을 일부러 지목하는 행위 등

04

“심사자의 이해충돌”

(사적 이해충돌) 저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지적 이해충돌) 특정 이론이나 사고에 편향되어 있어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이해충돌) 심사자가 속해 있는 기관 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논문의 심사를 맡게 된 경우

(재정적 이해충돌) 재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

04

“동료심사의 관리”

✓ 동료심사 전
- 저자에게 재정적, 사적, 직무적 이해충돌을 밝히도록 함
- 심사자에게 저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자와 어떠한 사적, 지적, 직무적, 재정적 이해충돌이 없음을 확인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함
- 만약, 심사자와 저자가 지적 이해충돌 관계라면 심사를 회피하거나 제척해야함

✓ 동료심사 과정
- 동료심사 과정 중 심사자가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파악한 경우, 학회에 이를 알리고 학회는 그 중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함
- 논문을 읽고 자신의 지적 성향과 충돌하여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함

✓ 동료심사 후
- 심사자는 동료심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함

04

“이해충돌 서약서”

[본 연구의 동료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저자와 이해관계에 대해 신고함]

1. 평가자 정보

평가자 이름	평가자 소속기관	평가자 전공	평가할 연구계획서

2. 저자와의 이해 관계

– 해당되는 이해관계에 체크 하시오

재정적 이해	직무적 이해	사적 이해	지적 이해	이해관계 없음

3.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해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해관계	
설명	

XXXX 년 X 월 X 일

평가자 서명

THANK YOU

발 표 자 이 효 빈